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2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관세 면제 신설(허성무의원안)	3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4. 22.
- (3) 회 부 일 : 2025. 4.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관세 면제 신설(허성무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u>제5장의12 지역국가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조세특례</u> ○ <u>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6)</u> ○ 감면대상: 지역국가산업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 ○ 감면율: 사업개시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은 2,000만원 ○ 감면세액 추징요건: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을 지역국가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u>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37)</u> ○ 면제대상: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면제세액 추징요건: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감면대상사업장을 지역국가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적용기한: 2028. 12. 31.

현 행	개정안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 허성무의원안 2025. 4. 22. 발의(의안번호 10023)

□ 개정안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1조의36),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7).

□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 등)과 관련시설(교육·연구·업무·지원시설 등)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할 수 있음.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함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국가산업단지는 2019년 47개에서 2024년 53개로 증가하였고 입주 업체는 53,725개에서 67,558개로 25.7% 증가하였으며 생산규모도 527조원에서 726조원으로 97.8% 증가하였음.

2024년 기준 전국 53개 국가산업단지(총면적 795km²) 내 67,558개의 입주기업은 726조 원의 생산과 2,34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약 1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²⁾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km², 개, 천명, 조원, 억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업단지 수	47	47	47	47	50	53
지정면적	806	806	788	779	786	795
입주기업	53,725	56,074	58,317	60,853	63,946	67,558
고용	1,088	1,080	1,065	1,084	1,089	1,099
생산	527	504	599	689	692	726
수출	1,734	1,625	2,107	2,369	2,299	2,34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년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산업단지(대상년도: 2024년)”, 2025. 6.

□ 한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의미함.³⁾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고용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⁵⁾ 전문인력 양성이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특례도 규정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

3) 안 제2조(정의), 제7조(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4) 안 제9조(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10조(지역 신산업 육성과 고용활성화 시책 마련),

5) 안 제11조(지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진흥), 제12조(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제13조(지역국가산업단지 중심 스마트 도시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4조(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6) 안 제17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20조(지역국가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1조(지역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지원),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도권 외 국가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⁷⁾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⁸⁾ 특정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5

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됨.⁹⁾

둘째, 제한된 조세지출 규모 하에서 기업의 지역국가산업단지로의 입주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의 대상을 입주기업이 아닌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새롭게 창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외에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 이전부터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 기존 기업까지 세제혜택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임.

셋째, 지역국가산업단지는 기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수, 연간 총생산 및 고용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넷째, 관세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의 면제는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자본재(법 제121조의3), ②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 및 ③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금지금(법 제126조의7)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세 면제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참고로 개정안은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국가산업단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심사 경과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